

학사경고자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 학칙 제41조의 2(학사경고)와 학칙 시행세칙 제54조(학사경고)에 근거한 학사경고 위험군 및 학사경고자의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사경고 위험군”라 함은 학사경고를 받지 않았으나 매 학기 평점평균 1.3이상 1.6 미만의 학업부진을 겪는 고위험군 및 학업에 충실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 ② “학사경고자”라 함은 학칙 제41조의2(학사경고) 제1항에 의해 매 학기 평점평균이 1.3(D0) 이하이거나 취득 학점이 9학점 미달인 자(단, 마지막 학기는 예외로 함)

제3조(학사경고 위험군 조기 관리) ① 교무처는 매 학기 성적이 1.3이상 1.6 미만의 학습부진을 겪는 위험군(이하 “학사경고 위험군”이라 한다)을 선별하여 소속전공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에게 통보한다. (2020.2.25.개정)

② 교무처는 학기 중 2주 이상 결석으로 확인된 수강생 명단을 해당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와 전문가 상담(진로/심리)을 받도록 안내한다. (2020.2.25.개정)

③ 교무처는 중간고사 후 1주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로부터 학업부진요인을 가진 학생의 명단을 제출받아 담당 지도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2주 이내에 학사경고 위험군의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결과는 학생 역량개발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한다.

⑤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소속전공 학사경고 위험군 중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 또는 학생상담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 (2020.2.25.개정)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학습법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2. 대상 학생의 대학생활 부적응을 개선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 학생지원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⑥ 전공으로부터 학사경고 위험군을 이관받은 교수학습센터 및 학생상담지원센터는 학업진작을 위해 별도의 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이행결과는 학생역량개발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한다. (2020.2.25.개정)

제4조(학사경고자 관리 절차) ① 교무처는 당해학기 성적처리 마감 후 학사경고자 명단을 해당 학생 및 보호자, 지도교수, 전공 주임교수에게 통보한다. (2020.2.25.개정)

② 지도교수는 2주 이내에 학사경고자 특별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상 학생의 부모상담을 시행해야하며, 상담결과는 학생역량개발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한다.

③ 전공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는 소속전공 학사경고자를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생상담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에 연계하여 특별관리하여 지도한다. (2019.11.14. 개

정),(2020.2.25.개정)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법 클리닉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2. 대상 학생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지원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3.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취창업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4. 이 외 지원 필요시에는 관계부서로 협력 요청함

④ 전공로부터 학사경고자를 이관받은 교수학습센터, 학생상담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 학사경고자 특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며 이행결과는 이행결과는 학생역량개발시스템에 입력한 후 교무처장에게 보고한다. (2019.11.14 개정)

⑤ 학사경고자는 학업에 정진함을 서약하는 학업증진서약서(별표1)를 교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2017.11.10 신설)

제5조(학사경고자 집중 관리) ①지도교수는 학사경고를 1회 이상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을 진행하여 학업증진을 유도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학생상담지원센터, 취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필수로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2019.11.14 개정)

1. 대상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학습법 클리닉은 교수학습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2. 대상 학생의 전문 상담 프로그램은 학생지원상담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2017.11.10 개정)

3. 대상 학생의 진로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은 취창업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지도함 (2019.11.14 신설)

4. 이 외 지원 필요시에는 관계부서로 협력 요청함 (2019.11.14 신설)

② 학사경고를 2회 받은 자는 차기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하여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특별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는 제한을 면제한다.

③ 학사경고자는 학업증진서약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개별 상담 후 교무처에 제출해야 하며, 학생상담지원센터 및 교수학습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2017.11.10 신설)

제6조(학사경고 해제) 학사경고를 받은 자가 다음 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0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직전학기의 학사경고를 해제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학업 증진 서약서

서약자 인적사항	이름		학과	
	학번		연락처	
학사경고	연속		통산	
학업계획				
<p>상기 본인은 학사경고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시에 제적됨을 숙지하고, 학업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201 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서약자 : _____ (인)</p> <p style="margin-left: 150px;">지도교수 : _____ (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교무처장귀하</p>				